

대부분 마스크 쓰고 탑승... 일부 승객 "앗! 깜빡"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첫날 보니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오전 출근길 광주 시민 상당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노마스크' 시민에 대한 탑승거부와 이로 인한 실랑이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보였다.

26일 오전 8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중합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는 50여명의 시민들이 버스 탑승을 기다리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일부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8시 30분께 버스정류장에 멈춰선 '218번' 버스에는 70대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했지만, 별다른 제지 없이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뒤이어 도착한 '송암74번' 버스에서 하차한 또 다른 70대 '노마스크' 승객은 2분 후에 도착한 '순환01번' 버스로 환승했다. 역시 승차 거부는 없었다.

8시 40분께 도착한 '311-1번' 버스에 오른 20대 여성은 혼이 났다. 50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안하시면 탑승 어렵습니다"라고 하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고, "다음부터 쓰고 탑승하세요"라는 버스 기사의 말에 안도한 듯 착석했다.

이 밖에도 광천터미널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시내버스 내부에는 '노마스크' 승객들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띄었으며, 동승한 시민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노마스크'는 택시 탑승에서 더욱 많았

미착용자 20대·70대가 많아 버스가 "다음엔 쓰세요" 지적 탑승 거부 실랑이는 없어 코로나 예방·공동체 안전 위해 시민 적극·자발적 협조 절실

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20대 남성은 승강장에 대기중인 택시에 자연스럽게 올랐다.

지하철도 '노마스크' 탑승이 가능했다. 매일 아침 출근 인파로 북적이는 서구 치평동 상무역 개찰구는 마스크 없이 통과가 가능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철도 등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려지는 사업장 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마스크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가 강제사항이 아닌데다 다툼이 벌어지면 애꿎은 탑승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직접적인 승차거부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도 26일 "이제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나와 내 가족의 생명,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시민방역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택시기사 정모(60)씨는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없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내리라고 하기도 어렵다"면서 "모두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6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20대가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남 지진 원인 분석 자료 수집만 1~2년"

광주기상청 간담회서 밝혀

해남에서 발생한 지진 원인을 밝혀내기 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간담회에서 "해남에서 발생한 지진의 원인 분석은 자료 수집에만 1~2년이 걸릴 듯하다"며 "본격적인 연구는 자료 수집이 끝나고 나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해남 등 전남지역 지진 연구의 경우 강원·경남 등에 비해 우선 순위가 밀려있는 탓에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데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해남에서는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는 1978년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지진이 발생한 적 없다가 지난 달 26일 이후 이달 23일까지 75차례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규모 1.8 지진을 시작으로 대부분 규모 2.0 미만인 미소지진이지만, 기상청이 통보하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5차례 관측됐다.

기상청은 지진이 잇따르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진앙 주변에 실시간 임시 관측망을 설치했다.

해남군은 대피 훈련 등을 위해 지진 대응팀을 가동했다. 내달 5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전남도, 광주 5개 자치구, 전남 22개 시·군 방재 담당자가 참여하는 지진 교육이 열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폐목재 가공업체 노동자 사망 안전관리 부실 업체 대표 입건

광주경찰청은 26일 폐목재 가공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업체 대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A씨가 운영하는 폐목재 가공장에서 직원 B(27)씨가 파쇄 설비에 끼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사고 당일 물건을 납품하러 공장을 떠난 동료대신, 청소를 하러 기계 장치 위에 올라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안전 설비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도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가기로 했다.

지역 노동계는 B씨 사고와 관련, '일하다 죽는 지역 노동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자체 소유 도로 아니어도 추락 방지 소홀 땐 배상 책임"

법원이 자치단체 소유가 아니더라도, 도로포장을 하고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활용했다면 지자체 관리 책임이 있어 설치·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 3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추락사고로 사망한 A씨 자녀 3명과 부모가 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곡성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곡성군이 A씨 자녀와 부모들에게 1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택배배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곡성군 오곡면 인근 도로 옆 하천에서 뒤집힌 화물차에 눌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택배 배달을 위해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가 중

하천 추락 사망사고 유족에 "곡성군 1억1200만원 지급"

립인 상태에서 내렸다가 오르막 경사길에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발견, 차량을 세우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다 2.4m 높이 하천으로 차량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A씨 가족들은 내리막길 도로에다, 도로 옆 하천과도 높이 2.4m 차이가 있어 추락사고 발생 및 부상·사망 위험이 있는데도, 가드레일 등 추락사고 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도로 설치·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곡성군 소유가 아니고 군이 도로 설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곡성군이 설치·관리

하는 공공 시설"이라며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드레일 등 차량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도로 옆을 흐르는 하천과 도로 간 2.4m 가량의 고저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추락 방지 연석이나 가드레일 등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곡성군은 해당 사건과 같은 추락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정상적 운행으로 차량이 추락할 상황까지 예견해 방지할 의무가 없다는 곡성군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곡성군의 손해배상 책임도 20%로 제한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법원 "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부족"

서진건설측 가치분신청 기각

법원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광주시의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서진건설측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26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지위)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진건설은 지난 11일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며 가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최종 협약체결 시한을 넘기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광주시는 이후 협약 결렬 책임을 물어 금융권에 예치된 당좌수표 48억원을 귀속시키려다가 서진건설측 반발로 소송으로 번졌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등산 41만7531㎡ 부지에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의시설, 특급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